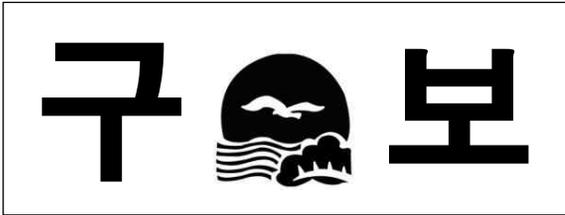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331 호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차 례

규 칙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10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3

예 규

○인천광역시중구예규 제106호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6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3-132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17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06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9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규 칙

제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으로 신설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따라 구 규칙 중 나이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나이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 (제1조~제2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6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10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 외의 부분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센터장의 임기 및 면직) ① (생략) ② 센터장의 정년은 <u>만 65세</u> 로 한다. ③ (생 략)	제5조(센터장의 임기 및 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65세</u>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원의 임면 및 정년) ①·② (생략) ③ 직원의 정년은 <u>만 60세</u> 로 한다. ④ (생 략)	제6조(직원의 임면 및 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60세</u>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제3조제1항관련)	(별표1)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제3조제1항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적 용 기 준</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폐기물처리 수수료</td> <td>텐트 설치료(1일 기준)</td> <td>5,000 원 이내</td> </tr> <tr> <td>대 인</td> <td>2,000 원 이내</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1,000 원 이내</td> </tr> <tr> <td rowspan="2">샤워장 이용료</td> <td>대 인</td> <td>2,000 원 이내</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1,000 원 이내</td> </tr> </tbody> </table>	구 분	적 용 기 준	금 액	폐기물처리 수수료	텐트 설치료(1일 기준)	5,000 원 이내	대 인	2,000 원 이내	고등학교 이하	1,000 원 이내	샤워장 이용료	대 인	2,000 원 이내	고등학교 이하	1,000 원 이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적 용 기 준</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폐기물처리 수수료</td> <td>텐트 설치료(1일 기준)</td> <td>5,000 원 이내</td> </tr> <tr> <td>대 인</td> <td>2,000 원 이내</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1,000 원 이내</td> </tr> <tr> <td rowspan="2">샤워장 이용료</td> <td>대 인</td> <td>2,000 원 이내</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1,000 원 이내</td> </tr> </tbody> </table>	구 분	적 용 기 준	금 액	폐기물처리 수수료	텐트 설치료(1일 기준)	5,000 원 이내	대 인	2,000 원 이내	고등학교 이하	1,000 원 이내	샤워장 이용료	대 인	2,000 원 이내	고등학교 이하	1,000 원 이내
구 분	적 용 기 준	금 액																													
폐기물처리 수수료	텐트 설치료(1일 기준)	5,000 원 이내																													
	대 인	2,000 원 이내																													
	고등학교 이하	1,000 원 이내																													
샤워장 이용료	대 인	2,000 원 이내																													
	고등학교 이하	1,000 원 이내																													
구 분	적 용 기 준	금 액																													
폐기물처리 수수료	텐트 설치료(1일 기준)	5,000 원 이내																													
	대 인	2,000 원 이내																													
	고등학교 이하	1,000 원 이내																													
샤워장 이용료	대 인	2,000 원 이내																													
	고등학교 이하	1,000 원 이내																													
<p>※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인 : 만19세 이상인 자 2. 고등학생이하: 만18세 이하인 자 	<p>※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인 : 19세 이상인 자 2. 고등학생이하: 18세 이하인 자 																														

예 규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사유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제4조)

- 민원인이 폭언(욕설, 헐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 있는 경우

나. 사용자 준수사항 등(제5조)

다.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등(제8조&제10조)

라. 사용자 교육(제13조)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6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예규 제106호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할 때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 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 “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 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 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 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 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
-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반납
 - ②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의 확인
 -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 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 부서장(동장)
- 2. 관리책임자(부) : 사용부서 주무담당
-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련)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빼앗김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 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USB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상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제5조제5호 관련)

연번	관리번호	영상기록관리					관리책임자		비고
		기록일시	기록장소	민원처리 담당자	삭제일	삭제자	부	정	
	20000-1								

[별지 제2호서식]

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제5조제5호 관련)

연번	관리 번호	음성기록관리					관리책임자		비고
		기록일시	기록장소	민원처리 담당자	삭제일	삭제자	부	정	
	20000-1								

고 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132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재결정·공시합니다.

2023. 6. 27.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재결정·공시**

- 1.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기준
- 2. 대상토지 :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161-1번지 등 21필지
- 3. 공시사항 : 개별토지별 제곱미터 당 가격(원/m²)
- 4. 공시내역

연번	소재지	결정지가	재결정지가	비고
	붙임	내역	참조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공시 내역 1부.

○ 문의처

- 원도심 지역 : 인천 중구 제1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 032-760-7378, FAX 032-760-7311
- 영종·용유지역 : 인천 중구 제2청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
☎ 032-760-7762(영종), 7764(용유), FAX 032-760-6991

[붙임]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공시 내역

연번	소재지		결정지가	재결정지가	비고
1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161-1	1,339,000	1,353,000	상향조정
2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98-3	2,185,000	2,250,000	상향조정
3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52-6	2,185,000	2,250,000	상향조정
4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54-2	2,185,000	2,250,000	상향조정
5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50-48	552,800	666,000	상향조정
6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2007-6	805,700	768,100	하향조정
7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2007-7	805,700	768,100	하향조정
8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2007-8	805,700	768,100	하향조정
9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11-2	950,000	922,200	하향조정
1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52-12	1,456,000	1,442,000	하향조정
1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179-195	367,900	965,300	상향조정
12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16-1	320,400	412,600	상향조정
1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85-83	168,400	658,600	상향조정
14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194	657,500	721,500	상향조정
15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196-2	97,600	178,800	상향조정
16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68-2	548,900	575,000	상향조정
17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68-5	175,800	188,200	상향조정
18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278-1	314,300	329,900	상향조정
19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379-3	254,400	259,500	상향조정
20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379-4	254,400	259,500	상향조정
21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 105	19,600	19,800	상향조정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06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3. 공고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허*철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71, 112동 30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폐문부재
2	김*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15, 101동 101호		폐문부재
3	이*정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911, 322호		폐문부재
4	서*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3나길 11, 202호		수취인불명
5	LIU*IN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108-1, 103호		폐문부재
6	나*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4번길 11, 502호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3. 06. 28. ~ 2023. 07. 12. (15일간) ※초일 산입

5. 공고사항

-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032-760-7699, FAX.032-760-699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32-760-76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